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구 미 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공공시설 요금감면 등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 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외 9건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부책(簿冊)	문서	통리(統理) 하다	총괄하다	여타(餘他)의	그 밖의
상오(上午), 하오(下午)	오전, 오후	폭원(幅員)	너비	미연(未然)에	미리
앙양(昂揚) 하다	드높이다	호창(呼唱) 하다	부르다		

- 나. 공공요금 미반환을 원칙으로 잘못 규정한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 정비
- 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6건 정비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불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장 어려운 한자어 정비

제1조(「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의 개정)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리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조(「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를 “오후”,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3조(「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양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을 “사기를 드높이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다.

제4조(「구미시 포상 조례」의 개정) 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제2호 중 “통한 사기양양”을 “통해 사기를 복돋음”으로 한다.

제5조(「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장, 부책”을 “대장 및 문서”로 한다.

제6조(「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주목”을 “지주대”로 한다.

제7조(「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호창하여야함”을 “불러야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시 또는 호창한”을 “표시하거나 부름”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라목 중 “사항 호창”을 “사항을 부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경락자 호창”을 “경락자를 부름”으로 한다.

제8조(「구미시동변영회조례」의 개정) 구미시동변영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리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9조(「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2장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제11조(「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제13조(「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

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

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5조(「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16조(「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사용료의 면제)”를“(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

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7조(「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8조(「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이용료 감면요율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9조(「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2호) 중 “면제”를 “감경”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지 1]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 4]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의3 관련)

구분	대 상	감면요율	비고
행사 및 대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		
개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사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활동보조자 1명 포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	100분의 10	

-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발급 3개월 미만), 한부모가족 감면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3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2]

■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입장료 감면대상(제8조 관련)

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구미시 다자녀 가정
3.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국가보훈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기타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비고
 - 가. 입장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별표 3의 입장료에 한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 나.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 구미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 추천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라. 그 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별지 3]

■ 구미시 강동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

복지회관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요율

○ 이용료 감면 요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동행인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인 2종목 이상 신청한 경우	100분의 20
○ 이용료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만 적용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u>통리</u> 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 략)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 <u>총괄</u> ----- -----.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생 략)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u>하오</u> 10시부터 다음날 <u>상오</u>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오후</u> ----- ----- <u>오전</u> ----- ----- ----- -----. ③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 남·여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u>사기양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u> 위하여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사기를 드높이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u> ----- ----- ----- -----.

□ 구미시 포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② (생략)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생략) 2. 각종 행사 초청 등을 <u>통한 사기양양</u> 3. ~ 5. (생략)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u>통해 사기를 북돋움</u> 3. ~ 5.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u>대장, 부책, 시설, 장비, 비품</u>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6조(수탁자 의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대장 및 문서</u> ----- ----- -----.

□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재해대비 조치)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도시림등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한 <u>지주목</u> 보강, 재해 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2. (생략)	제6조(재해대비 조치) ----- ----- ----- ----- -----. 1. ----- ----- ----- <u>지주대</u> ----- ----- 2. (현행과 같음)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48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 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u>호창하여야</u> 함.	제48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불러야 함. 3. (현행과 같음) 4. ----- ----- ----- 표 <u>시하거나 부른</u> ----- ----- ----- -----
3. (생략)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 출하지역 · 품목 · 품종 · 수량 · 품위등급등을 <u>표시 또는 호창한</u>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 입찰금액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	

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③ (생략) 제49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경매실시 가. ~ 다. (생략)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등 필요한 <u>사항</u> <u>호창</u> 마. (생략)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u>경락자</u> <u>호창</u> 5. (생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경매절차)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u>사항</u> ----- <u>을 부름</u> 마. (현행과 같음) 바. ----- <u>경락자</u> <u>를 부름</u> 5. (현행과 같음)
--	--

□ 구미시동변영회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u>통리</u> 하고 변영회를 대표하며 변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5조(위원장) ①----- <u>총괄</u> ----- ----- -----.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u>통리</u>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5조(위원장) ①----- <u>총괄</u>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u>여타</u>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생략)	제9조(회계) ①----- ----- <u>그 밖의</u> ----- -----.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회무를 <u>통리</u>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총괄</u> ----- ----- ----- -----. ④ (현행과 같음)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수수료의 반환) <u>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용자가 다른 일자에 낙동강승마길을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1.·2. (생략)	제11조(수수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 ----- ----- -----. 1.·2.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u> 1. ~ 3. (생략) ② (생략)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경)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100분의 60 감면 가.·나. (생략)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u>수급자</u> 마. (생략)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 ----- <u>수급자</u> 및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마. (현행과 같음)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
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사.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
는 사람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3. (생략)	<u>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u>
②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u>사용료의 면제</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제11조(<u>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u>) ① ----- <u>해당하는 경우</u> -----.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u>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사람</u>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u>해당하는 사람</u>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u>해당하는 사람</u>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사용료 감면) 예술회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설></u>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u><신설></u>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신설></u>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설></u>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신설></u>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소 관 부 서		기 획 예 산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김 울 자
	담 당 자	김 효 미 (480-6523)

